본고는 민원인, 관련 단체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령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질의하여 회신한 주요 사례 중에서 닭고기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

본 내용은 회신 당시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회신된 내용이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령,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, 축산물의 표시기준, 기타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현행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따라서 관련 규정의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자를 표기했으니 본 질의 · 응답집의 질의회신내용을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 등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닭 · 오리 식육의 포장 의무화 제도의 식육포장처리업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

질의 **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. 닭을 벌크로 이송 시 예전처럼 비닐을 덮는 것은 안 되고 결속 등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. 이 관련법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. 그리고 결속을 비닐로 묶는 것은 안 되나요?**

회신일) 2011. 06. 08

회신내용)

■ 닭 · 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는 그동안 포장되지 않은 닭 · 오리고기가 무분별하게 유통됨으로써 유통과정 중에 유해물질(이물, 미생물 등)이 오염되거나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시행된 것입니다.

즉, 일반 공산품이나 과자 등과 같은 가공품을 유통하는 것과 같이 판매하려는 닭 · 오리고기를 모두 용기 등으로 포장하고 포장된 내용물에 관한 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여 유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 중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을 보신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.

따라서 앞서 설명해 드린 포장유통 의무화의 시행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닭고기를 포장할 때는 포장된 내용물을 외부로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포장지를 찢는 등 반드시 훼손해야만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포장 처리해야 합니다. 귀하의 말씀과 같이 단순히 끈으로 묶는 것과 같이 포장지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포장처리한다면, 내용물의 교환이 가능할 것이고, 또한 그러한 과정 중에 미생물, 이물 등의 오염이 가능할 것이고, 이를 본 소비자 역시 그렇게 포장된 내용물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아 구입하지 않을 것이므로 올바른 포장방법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.

※출처 : 축산물위생관리법 질의 · 응답집